



전남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공기업]

2019. 12. 18.



전남개발공사

목 차

I. 인권경영 추진개요	3
1. 인권경영 추진현황	3
2. 2019년 인권경영 주요 추진내용	6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9
1. 경영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9
2. 중장기 추진전략	10
III. 인권영향평가	11
1. 실시개요	11
2. 평가결과	13
3. 결과분석	15
4. 총평 및 환류	16
IV. 향후 추진계획	18

전남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I. 인권경영 추진개요

1 인권경영 추진현황

- (추진배경) 인간친화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경영 기반 강화
 - 인권경영체제의 실질적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강화 요구에 부응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리스크 관리 등 필수 가치로 설정
- (선도기관) '18년 지방공기업 유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선제적 인권경영체제 구축
- 추진경과

'18.5.2 ~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기관 선정(전남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 4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 유일 ○ 인권경영추진TF → 총 6명(전략기획실장, 기획·평가·규정·교육 실무자) ○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 전직원 인권실태조사 실시 → 5개 분야, 87개 문항
'18.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총 11명, 외부 6(전문가 3, 협력업체 1, 지역주민 2), 내부 5(본부장 2, 실장 2, 노조위원장 1)
'18.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경영위원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경영규정 제정(안) 심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체 개발
'18.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인권경영포럼 대표 발제 → 전남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18.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
'18.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심의[인권경영규정 제정(안) 및 정관 등 관련규정 개정(안)]
'18.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사례 대표 발제
'18.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개발공사 인권선언

○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

	인권경영규정 (2018.11.26)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인권경영체계	이행계획의 수립, 주관부서 지정 및 행정적 지원, 인권교육, 경영활동점검 및 공시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참석수당, 의견청취, 기파·제척, 비밀누설금지, 위원지위상실
		제4장 인권의 구제	인권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사건 처리절차, 보강조사, 결정, 신고인 신분보장, 무기명 신고처리, 시정과 징계
		제5장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자료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인권실태조사
1	관련 규정 마련	정관 (2018.11.26)	<p>제1조(목적) ~ (생략) 윤리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p> <p>17. ~ (생략)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추진</p>
		인사규정 (2018.11.26)	<p>[인사규정]</p> <p>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르되, 사장은 인권의 보호·증진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인사규정시행규칙]</p> <p>제42조의2(인권의 보호)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 특히, 성폭력, 성희롱 등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감사규정 (2018.11.26)	<p>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4호 생략)</p> <p>5. 감사인은 감사로 인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윤리헌장 (2018.11.8)	~(생략)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권의 보호·개선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윤리경영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리규정 (2018.11.8)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③ 임직원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인권
경영
선언

전남개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지역가치 창출로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열린 공기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람 중심 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고용 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 도민,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화들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의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라남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2018. 12. 14.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일동

3

인권
경영
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분야	경력
외부위원	신순호	인권전문가	목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외부위원	송병관	인권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 팀장
외부위원	고형석	인권전문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팀장
외부위원	나양주	협력업체	성보건설산업(주) 소장
외부위원	정병표	지역주민	무안군 삼향읍 주민자치위원
외부위원	박철홍	지역주민	목포시 안전모니터 봉사단
외부위원	명주아	여성대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지원팀 차장
내부위원	윤주식	인권경영책임관	전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	이현웅	사측대표	전남개발공사 본부장
내부위원	이승민	근로자대표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인권경영책임관) 기획조정실장
 - (전담부서) 기획조정실 내 인권혁신파트 운영
 - (전담인력) 2명(행정3급 1명, 행정5급 1명)
 - (주된역할) 인권경영 관련 업무 전반
- 전남개발공사 인권경영 추진전략 수립
 - (중장기) 대내외 환경분석(SWOT) → 중장기 추진로드맵 → 추진방향설정
 - (단기) 2019년 인권경영 추진전략 수립
- (인권경영규정 일부개정) 제10조(구성) 내부위원 조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변경 : 내부 2명 감원
 - * 외부위원 여성대표자 1명 추가위촉 (2018.12.11)
-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체계 기반 강화
 - 19. 1 : 갑질 시민감사제도 도입
 - 19. 11 :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 19. 12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20. 4 :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예정
- (인권영향평가) 추진
 - 인권영향평가 주체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19년 기관운영인권영향평가만 실시
 - * 2018년 주요사업(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기 실시
 -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료 사전 배포(D-7) 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의견 제시
 - 평가체크리스트 구성 및 실무자 관련교육(~11/22)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18. / 11 : 00 ~ 12 : 00
- 방 식 : 인권영향평가 관련 자료 사전배포 → 검토 → 의견개선(위원회 개최 시)
- 심의안건 : 2019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보고안건 : 전년도 보완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년 인권경영추진 실적 보고 등

○ (인권경영 내·외부 확산)

① (내부직원) 인권경영 내재화 강화방안

- * 인권경영 선언문 판넬제작 사내 게시판(8, 9F 출입구) 게시
- * 사내 온라인 그룹웨어 게시판 인권경영 관련 자료 공유 통한 내재화
→ 인권경영선언문(설명자료 포함), 인권경영 추진현황(사진, 결과보고) 게시
- * 인권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특강(12/3) 및 온라인 교육(2020년 예정) 실시

② (이해관계자) 공사 인권경영선언, 인권침해 상담 및 침해신고 절차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 이해관계자(계약업체 등) 인권선언문, 인권상담 및 침해발생 시 신고 절차 안내문 배포
- *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간담회 개최
→ 공사 인권경영 활동 전반 및 정책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및 소통
→ 주민참여위원회 인권경영 관련 의견수렴 및 전파(11/15)
→ 오룡지구 사업현장 협력업체 경영진 인권경영 관련 간담회 개최(12/4)

주민 인권경영간담회



협력업체 인권경영 간담회



유관기관 인권경영 설명회



③ (일반대중) 공사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 *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관련 파트 신설
- * 공시내용 : 인권경영체제,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결과 등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대한 최종보고서

④ (타기관 확산) 한국농어촌공사 등 12개관 벤치마킹 지원

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 추진

- *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제작 (규정 → 시각적 매뉴얼)
- *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 구제절차에 대한 설문평가 실시
 - 설문대상 : 내부직원
 - 설문내용 : 경험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평가, 개선점 등

⑥ 인권침해 상담소 및 신고센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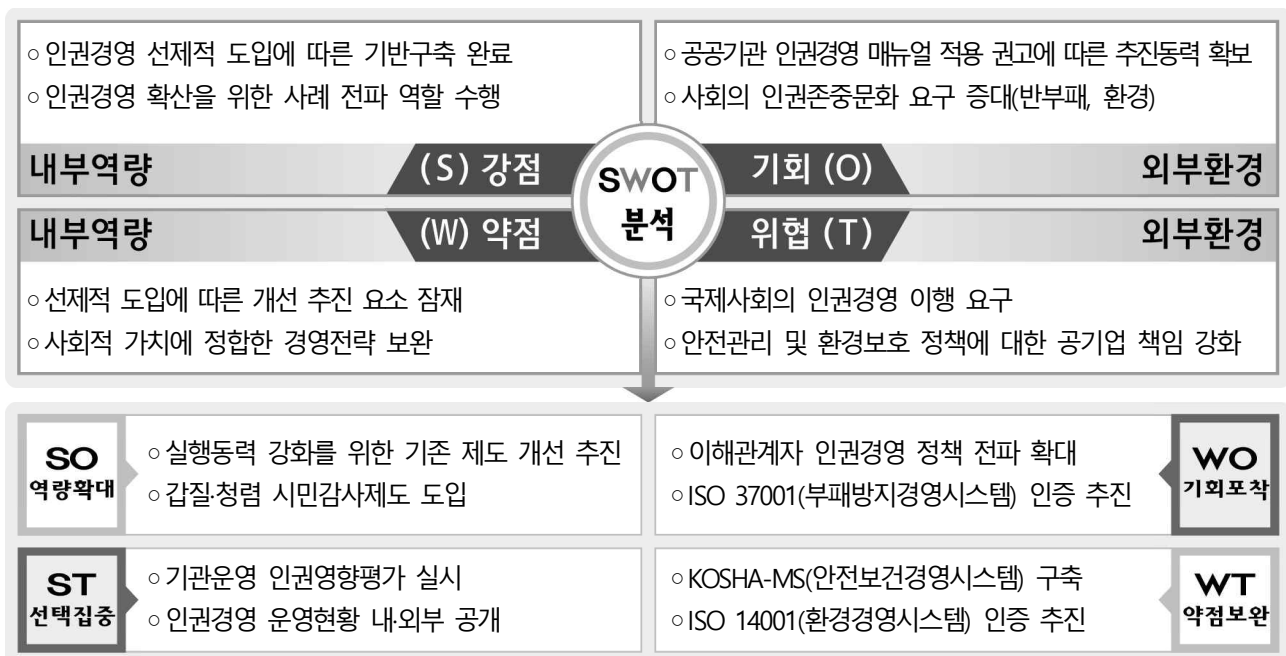
- * 인권침해 상담소 개설
 - 대면상담 : 상담시간(평일 09:00 ~ 18:00), 장소(공사 내 별도공간)
 - 온라인상담 : 인권상담 전용이메일 계정 생성
- *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Ⅱ. 인권경영 추진체계

1 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경 영 여 건	시 사 점
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선제적 구축에 따른 인권경영 기반 마련 ○ 인권경영에 대한 내재화 강화 및 확산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시스템 개선, 확산 및 전파 노력 증진
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 UN글로벌 콤팩트, ISO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 *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책임 강화
정 부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반영 ○ 공공기관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실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차단 강화



추진 방향

- (추진체계 고도화) 실행 동력 강화 위한 구축제도 개선, ISO 및 안전보건시스템 인증을 통한 체계화, 갑질·청렴 시민감사제도 도입
- (마인드 내재화) 임직원 인권경영마인드 내재화 강화
-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공개 및 확산) 인권경영 운영현황 공개 및 사례 전파 확대

2

중장기 추진 전략

□ 중장기 추진 로드맵

중장기 목표	성장기 (2019) 『인권경영제도 개선』	성숙기 (2020~2021) 『정책실행 확대』	안정기 (2022~2023) 『시스템과 문화 정착』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개정 ○ ISO 37001, 14001 인증 ○ KOSHA-MS 인증 ○ 전임직원 인권교육 ○ 영향평가체크리스트 실무자 교육 ○ 평가 체크리스트 개선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 밸류체인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신재생에너지 분야) ○ 관련 시스템 지속 개선 ○ 인권 감수성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규범제도 강화 ○ 밸류체인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 인권경영 3년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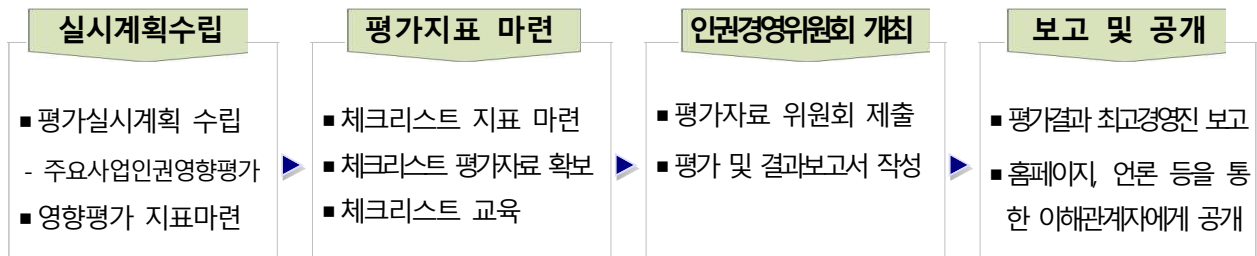
□ 추진전략

미션	친환경 공간개발을 통한 도민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			
비전	인권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공기기업			
인권경영목표	사람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			
추진전략	경영혁신 목표와 연계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과제추진	내실있는 인권영향평가	참여와 공개에 기반한 인권경영 체계 운영
2019년 목표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인권경영 Value-Up 실현			
추진방향	실행동력 강화 위한 구축제도 개선	임직원내재화 강화, 외부전파 확대	인권영향평가	투명한 인권경영 운영결과 공개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 ISO, KOSHA-M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임직원 인권교육 ○ 구제절차 평가시행 ○ 구제절차 매뉴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평가 실시 ○ 평가증빙자료 내실화 ○ 체크리스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선언문 공개 ○ 영향평가보고서 공개

Ⅲ. 2019년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 실시 개요

- 평가목적 : 경영활동 수행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파악, 평가로 지속발전 가능 도모
- 평가원칙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 확보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평가참여 (전문가, 주민, 이해관계자, 여성)
 - 자료 객관성 확보위한 자료증빙 철저, 평가결과 외부 공개
-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 평가주체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7명

구분	성명	분야	경력	비고
외부위원	정병표	지역주민	무안군 삼향읍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외부위원	송병관	인권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 팀장	
외부위원	고형석	인권전문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조사팀장	
외부위원	나양주	협력업체	성보건설산업(주) 소장	
외부위원	명주아	여성대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지원팀 차장	
내부위원	윤주식	인권경영책임관	전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	이승민	근로자대표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평가일시(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2019. 12. 18 (수)
 - 1차 (12/9~12/17) 사전배포 평가자료 위원별 서면평가
 - 2차 (12/18)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최종의견 개진

○ 평가항목 (2018년 주요사업인권영향평가 실시로 금번 평가 제외)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10개 분야 140개 지표

분류	이슈	지표수	주관부서	
I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기획조정실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	29	감사실, 기획조정실
		(4) 인권경영성과	기획조정실	
		(5) 구제절차 마련		
II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17	경영지원처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II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4	경영지원처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IV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11	경영지원처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V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14	경영지원처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VI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17	건축안전사업처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경영지원처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오룡사업단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경영지원처
VI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7	기획조정실
		(2) 모니터링 실시		감사실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기획조정실
VIII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8	분양보상처
		(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경영지원처
IX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7	기획조정실
		(2) 환경정보의 공개		경영지원처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신사업개발처
		(4) 비상계획 수립		건축안전사업처
X	소비자인권 보호	(1)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감사실
합 계		140	-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류	지표		답변결과(개수 및 응답률)					
			합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합계			980	909	41	0	0	30
비율(%)			100%	93%	4%	0%	0%	3%
I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42	41	1	0	0	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42	39	3	0	0	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	35	33	2	0	0	0
	(4)	인권경영성과	49	37	12	0	0	0
	(5)	구제절차 마련	35	33	2	0	0	0
	합계		203	183	20	0	0	0
	비율(%)		100%	90%	10%	0%	0%	0%
II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35	35	0	0	0	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42	42	0	0	0	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1	19	2	0	0	0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21	13	0	0	0	8
	합계		119	109	2	0	0	8
	비율(%)		100%	92%	2%	0%	0%	7%
II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28	28	0	0	0	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5	35	0	0	0	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35	35	0	0	0	0
	합계		98	98	0	0	0	0
	비율(%)		100%	100%	0%	0%	0%	0%
IV 강제노동 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56	54	0	0	0	2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1	20	1	0	0	0
	합계		77	74	1	0	0	2
	비율(%)		100%	96%	1%	0%	0%	3%
V 아동노동 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42	27	0	0	0	15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56	52	2	0	0	2
	합계		98	79	2	0	0	17
	비율(%)		100%	81%	2%	0%	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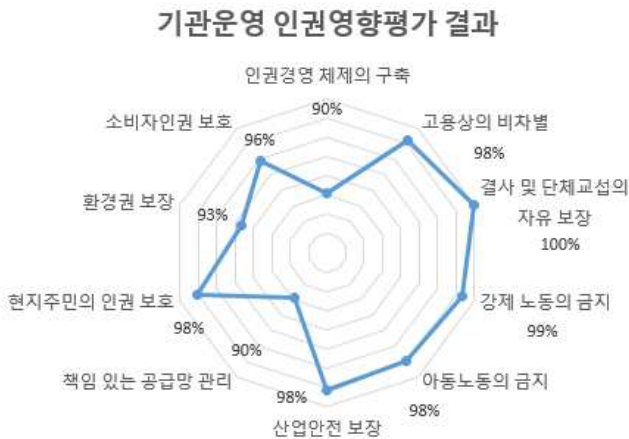
분류	지표		답변결과					
			합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Ⅵ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35	34	1	0	0	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28	28	0	0	0	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35	35	0	0	0	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1	20	1	0	0	0
	합계		119	117	2	0	0	0
	비율(%)		100%	98%	2%	0%	0%	0%
Ⅶ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4	14	0	0	0	0
	(2)	모니터링 실시	14	13	1	0	0	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21	16	4	0	0	1
	합계		49	43	5	0	0	1
	비율(%)		100%	88%	10%	0%	0%	2%
Ⅷ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42	39	1	0	0	2
	(2)	지역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14	14	0	0	0	0
	합계		56	53	1	0	0	2
	비율(%)		100%	95%	2%	0%	0%	4%
Ⅸ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35	30	5	0	0	0
	(2)	환경정보의 공개	21	21	0	0	0	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28	27	1	0	0	0
	(4)	비상계획 수립	35	33	2	0	0	0
	합계		119	111	8	0	0	0
	비율(%)		100%	93%	7%	0%	0%	0%
Ⅸ 소비자 인권보호	(1)	소비자 사생활 보호	42	42	0	0	0	0
	합계		42	42	0	0	0	0
	비율(%)		100%	100%	0%	0%	0%	0%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1 종합 권고의견

응답결과 그래프



점수결과표

분류	이슈	응답률
I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0%
II	고용상의 비차별	98%
II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IV	강제 노동의 금지	99%
V	아동노동의 금지	98%
VI	산업안전 보장	98%
VII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0%
VIII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98%
IX	환경권 보장	93%
X	소비자인권 보호	96%
	평균	96%

의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긍정적(예+해당없음) 응답률이 96%**로 나타 났으며,
- 보완필요는 4%로 아래 명시한 주요 이슈별 권고의견과 같음
- 정보없음 응답이 0%로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충실성에서 우수하였음
- 부정적 답변(아니오) 응답이 0%로 인권경영을 통한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 구축이 잘되어 있음

2 주요 이슈별 권고의견 (보완필요 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 성과)

- 인권경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인권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인권경영 성과의 보고 및 공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보고는 회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함.

2.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회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 조항은 특별히 18세 미만 아동을 특별히 고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은 시키지 말도록 하는 조항임.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근로계약 또는 채용계획에 특별조항으로 명시하여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조항에 대한 공사 자료는 공사 간부들에 대한 갑질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로 이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고, 하청, 자회사, 협력회사 등에 속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런 모니터링은 꼭 인권침해를 적발 보다는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보안 담당직원들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을 명시한다는 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환류

1 인권영향평가 총평

- 인권영향평가는 공사의 경영활동 수행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확립과 구체적 시행여부에 대해 확인 평가하는 과정으로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하여 인권경영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음. 2018년 11월 인권경영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2018년 12월 인권경영선언을 하였음. 인권경영 시스템 및 운영에 있어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진척이 있었음.

- 근거 및 증빙자료 충실하게 준비하여, 사전에 평가표와 함께 배포하여 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음. 이는 정보없음 0%라는 수치로 증명됨.
- 부정답변(아니오) 0%로 인권침해 리스크 사전예방체계가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인권경영성과 분야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번 인권경영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인권경영 성과 보고서 작성으로 그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 질것으로 보여 향후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작 및 배포하고, 공사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안내 절차를 홍보하는 것은 인권경영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보임.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이슈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에 포함된 사항으로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 노동의 금지에 있어 18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은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계약 또는 채용계획에 특별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보장에 있어 공사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오룡지구 사업현장 계약업체와 공사간 경영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 및 인권경영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경영 민간 확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보임.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환경권 보장에 있어 2018년 주요사업(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지적된 사업현장 보건, 안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추진하는 등 보완 완료 하였음.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환경문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및 소비자 인권보호는 특이사항 없음.

2 환류 (2020년 인권경영 실행과제)

○ 2020년 인권경영 실행과제 목록

분류	이슈	지표	담당부서
I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4) 인권경영성과	기획조정실
V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경영지원처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VI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 모니터링 실시	기획조정실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기획조정실, 감사실

IV. 향후추진계획

- 2019. 12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경영진 보고
- 2019. 12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시
- 2020. 1 : 2020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실행과제 반영)